

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6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04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조례 제7조제2항 “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” 는 조항은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, 「지방자치법이 정한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경기도에서 개정 권고가 있어 동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” 를 “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 로 개정함 (안 제7조제2항).

개정 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

-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,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6. 4. 11 - 2006. 4. 21 (10일)

기타 참고사항 :

- 「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」에 대한 시정권고 공문 (경기도법무담당관-3333, 2006. 4. 5)

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
<p>제7조(정관)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 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8.(생략)</p> <p>②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<u>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정관) ①....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<u>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